지평지성 Newsletter

| 2012년 4월 제40호 |

■ 최신 법령 ■

[공정거래] 공정거래법 및 과징금 고시 개정

박형삼 변호사 | 이병주 변호사

1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개정

사업자단체가 개입된 담합 과징금을 상한 10%로 상향하고, 조사방해의 경우 형사처벌 가능

- 가. 사업자단체를 통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사업자간 공동행위(제 19조)와 동일하게 10%로 상향 조정(제28조) : 이전에는 동일한 부당한 공동행위이더라도 과징금 상한이 사업자간 행위의 경우 10%, 사업자단체를 통한 행위의 경우 5%로 차이가 있었음. 다만,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2012년 6월 22일 이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이전 법률에 따라 처리
- 나. 공정위의 처분시효를 7년으로 연장하고, 공정위가 조사개시하는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 내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 가능(제49조제4항) : 개정 전에는 공정위 조사 개시 여부 와 관계없이 행위 종료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이 불가능했음. 다만,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2012년 6월 22일 이후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조사되는 사건부터 개정 규정 적용
- 다. 공정위 조사시 폭언·폭행, 현장진입 지연·저지 등의 조사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벌(3년 이하 징역, 2억원 이하 벌금) 부과 가능(제66조) : 개정 전에는 조사방해에 대해 사업자의 경우 최대 2억원, 임직원의 경우 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었음
- 라. 다운로드: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일부개정(법률 제11406호, 2012. 6. 22. 시행)

지평지성 Newsletter

| 2012년 4월 제40호 |

2. 「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개정

법 위반행위 후 가격 환원 등 자진시정을 한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최대 50% 감경

- 가.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인상폭만큼 가격을 인하하거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경우 최대 50%까지 과징금 감경폭을 확대하고,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의 50% 이상 인하하는 경우 최대 30%까지 과징금 감경
- 나.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40%로 확대하고, 조사방해 유형에 따라 가중한 도를 40%(자료은닉·폐기, 접근거부 또는 위·변조 행위) 또는 20%(기타 조사방해행위)로 세분화
- 다. 법위반 행위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상습적 법 위반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을 20% 가중
- 라. 다운로드: 「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일부개정(고시 제2012-6호, 2012. 4. 1. 시행)